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결혼이민자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 등 》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595호)
-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20003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동찬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 의견	4
1. 결혼이민자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이정현의원안)	4
2. 건강검진기관에 병원선 추가(강대식의원안)	11
※ 참고사항	21
1. 병원선별 진료 및 검진 시설 현황	21
2. 검진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22

I . 개요

1. 이정헌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959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정헌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6. 29.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2.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200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7. 16.
-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과 같이 검진기관 지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결혼이민자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이정현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2. (생략)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 자. (생략) <u><신설></u> 차. (생략) 4. (생략)	제3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 -----.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u>결혼이민자</u> 카. (현행 차목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사항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¹⁾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임. 「출입국관리법」상 결혼이민자(F-6) 체류자격 소지자 외에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신설 전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던 종전의 거주 체류자격(F-2-1)²⁾ 소지자 및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영주자격(F-5-2)³⁾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음.

○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⁵⁾ 및 별표1의2에 따른 결혼이민자(F-6)는 ①국민의 배우자(F-6-1),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2)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3)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4)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일반체류자격) ① 제10조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일반체류자격)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단기체류자격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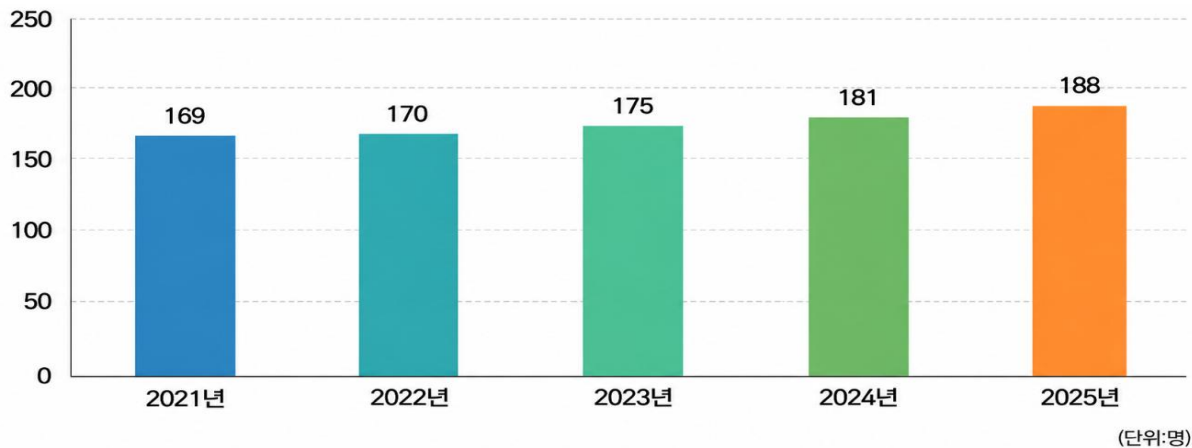
[별표 1의2(장기체류자격)]

27. 결혼이민 (F-6)	가. 국민의 배우자 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②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2), ③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 등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F-6-3)임.

-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2021년 168,611명에서 2025년 188,105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여성이 151,153명으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음.

< 연도별 결혼이민자 현황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결혼 이민자	168,611	169,633	174,895	181,436	188,105

자료 : 법무부 출입국통계(<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최종검색일 2026. 7. 21)

< 결혼이민자 성별 현황(2025년 말 기준) >

총 계	여 성	남 성
188,105명 (100.0%)	151,153명 (80.4%)	36,952명 (19.6%)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 DB(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5CA0510N, 최종검색일 2026. 7. 21.)

□ 결혼이민자는 장기간 국내에서 생활하며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가족을 형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이들의 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건강과 생활 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됨. 특히 국내 정착 초기에는 출신국과 우리나라의 건강행태 및 보건의료체계 차이, 언어·문화적 장벽 등으로 인해 건강정보의 습득,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건강 문제가 적기에 발견되지 않을 경우 의료비 부담 증가와 지역사회 보건·복지자원의 추가 소요로 이어질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예방적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에게 정기적인 국가건강검진을 제공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건강검진 이후 필요한 진료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혼이민자의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재한외국인’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하고,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재한외국인을 의미하므로, ‘결혼이민자’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체류자격을 갖출 것이 요구됨.

○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⁶⁾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⁷⁾에 따라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등에 해당하면 직장가입자가 되고,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과 법정 체류자격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음.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하 “국내체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④ ~ ⑪ (생략)

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외국인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등) ① 법 제109조제3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말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1호에 따른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27호에 따른 결혼이민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 ② 법 제109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이란 별표 9에 따른 체류자격을 말한다.

③ ~ ⑤ (생략)

[별표 9(체류자격)]

외국인의 체류자격(기호)
1.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2.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 방문동거(F-1), 거주(F-2) ,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 결혼이민(F-6)
4. 기타(G-1)(「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5.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특히 결혼이민(F-6) 체류자격자는 일반 외국인의 6개월 국내 체류 요건을 기다리지 않고 입국일 기준(외국인등록이 미등록된 경우 외국인등록일 기준)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이 됨.
- 따라서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아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는 같은 법 제52조⁸⁾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됨.
- 그런데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마목⁹⁾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인 결혼이민자는 현재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8)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암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
3. 영유아건강검진: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진항목은 성별, 연령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결혼이민자는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시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법 개정 실익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임.

2. 건강검진기관에 병원선 추가(강대식의원안)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의료기관·보건소와 마찬가지로 병원선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u>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u>)가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① ---- ----- ----- ----- <u>보건의료원 및 병원선</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 사항

(1) 병원선 현황

□ 병원선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에게 진료, 예방 접종, 보건교육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운항하는 선박을 말함

○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부터 도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건조하였고, 현재 인천·충남·경남에서 각 1척, 전남에서 2척 등 총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

< 병원선 선박규모 및 인력 등 운영현황 >

(단위: 톤, 명)

시도	병원선		건조연도	선박규모	인력					진료대상	대상자
					공중보건 의사	의료진	선박	기타	총인원		
경남	1척(511호)		2023	162	4	2	7	1	14	7개 시군(41개 섬)	2,379
전남	2척	(511호)	2023	390	3	5	7	1	16	5개 시군(77개 섬)	3,974
		(512호)	2003*	170	3	4	6	1	14	6개 시군(90개 섬)	5,067
인천	1척(531호)		2025	270	3	4	8	1	14	1개 시군(17개 섬)	19,425
충남	1척(501호)		2003	320	3	6	8	3	20	6개 시군(32개 섬)	3,221

* 노후 전남512호 대체 190톤급 친환경 병원선 건조('26.8월 준공)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및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자료 재구성

○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과 병원선을 운영하는 4개 지자체 각각의 조례에 따라 환자진료·감염병 예방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음.

<훈령 및 조례상의 병원선 주요 업무>

훈령	조례_인천	조례_경남	조례_전남	조례_충남
환자진료	진료 및 보건향상	진료 및 보건향상	진료 및 보건향상	진료 및 보건향상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	각종 감염병의 예방접종 및 방역	각종 전염병의 예방	각종 감염병 질환 예방	각종 전염병의 예방
보건교육	보건에 대한 교육 및 계몽	보건에 대한 교육·홍보	보건에 대한 계몽	보건에 대한 교육·홍보
-	가족계획	-	가족보건	모자보건
-	응급환자의 응급처치 및 거점병원으로 후송	-	-	-
-	응급정보의 전달 및 후송시의 치료	-	-	-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그 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그 밖에 병원선 설치 목적에 관한 업무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중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국가건강검진 개요

□ 국가건강검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검자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의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함.

○ 「모자보건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등 현재 10개 목에 걸쳐 국가건강검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¹⁰⁾

-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하는 ‘건강검진기관’이 되려면,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중에서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일반검진기관·암검진기관·영유아건강검진기관·구강검진기관 등 4가지 유형으로 검진기관을 구분하고 있음.

< 연도별 검진유형별 검진기관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총계	23,960	24,466	24,943	25,373	25,643	25,749
일반검진	6,398	6,578	6,714	6,817	6,878	6,876
영유아	4,074	4,000	3,935	3,873	3,774	3,722
암검진	7,142	7,361	7,499	7,643	7,738	7,744
구강검진	13,530	13,812	14,129	14,417	14,638	14,779

※ 총계는 검진종별 중복 검진기관을 1개소로 산정
자료: 보건복지부

10)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진
-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 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 사.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 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 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 시도별 검진기관 현황 >

2026. 6. 30.기준(단위: 개소)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23,960	24,466	24,943	25,373	25,643	25,749
서울	5,703	5,781	5,866	5,954	6,008	6,047
부산	1,532	1,596	1,623	1,645	1,669	1,672
대구	1,227	1,249	1,299	1,326	1,344	1,352
인천	1,345	1,391	1,427	1,479	1,497	1,494
광주	737	770	779	792	798	803
대전	727	718	720	733	738	738
울산	435	438	439	440	444	446
세종	166	176	181	180	180	180
경기	6,392	6,593	6,764	6,898	7,004	7,058
강원	545	551	556	561	560	570
충북	613	622	629	639	644	644
충남	726	732	749	772	786	784
전북	798	809	817	818	819	809
전남	591	592	598	602	605	610
경북	898	901	909	920	922	917
경남	1,287	1,298	1,339	1,354	1,360	1,363
제주	238	249	248	260	265	262

자료: 보건복지부

- 한편, 일반검진기관·암검진기관 및 구강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출장검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추가 지정기준을 갖추어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2026년 6월 기준 총 523개소가 출장검진기관으로 지정됨.

< 연도별 출장검진기관 현황 >

(단위: 개소)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6
595	558	546	545	526	523

자료: 보건복지부

(3) 검토의견

- 도서 지역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이 정기적인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병원선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병원선의 이동성과 의료인력·장비를 활용한 건강검진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도서 지역 주민의 건강검진 접근성과 수검 편의를 높이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검진기관의 유형 및 그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일반검진기관은 병원·의원·보건소 등 육상의 고정된 의료기관을 전제로 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병원선은 해상 이동형 시설이므로 고정된 소재지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검진기관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병원선의 인력·장비·시설 등을 고려할 때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출장검진기관은 일반·암·구강검진기관이 “의료기관 밖에서” 검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어 지정받는 형태로서 일반검진기관 등이 기본 지위이고, 출장검진은 그 기관의 검진장소를 외부로 확장하는 추가적인 자격에 가까움.

- 병원선을 통한 건강검진은 의료취약지역을 이동하면서 건강검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출장검진기관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병원선 자체를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 그 선박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이는 검진기관 밖으로 출장하여 실시하는 검진이 아니라 병원선이라는 검진기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내원검진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병원선을 출장검진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은 현행 개념과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병원선은 일반검진기관 등으로 분류하되, 일반검진기관 등에 대한 현행 지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선박의 이동성 및 공간적 특성 등을 고려한 별도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거나, 시행규칙상 출장검진기관의 지정기준에 차량기준¹¹⁾ 외 선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은 출장검진기관이 섬·벽지지역 검진대상자에게 일반검진 및 암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9조의2는 출장검진기관이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관할

11)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출장검진기관 지정기준 중 차량기준

의료기관의 개설자(대표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인 출장검진차량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출장검진차량을 갖춰야 한다.
 ※ 출장검진차량이란 출장검진을 위하여 자동차에 해당 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고 진료공간과 탈의공간을 구분한 차량을 말한다.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면 의사 1인당 일반검진과 구강검진은 최대 120명, 암검진은 최대 70명을 검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추가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¹²⁾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건강검진에 드는 비용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2조 및 제13조¹³⁾는 검진기관이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면 공단은 검진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하고,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공단은 같은 법 제45조¹⁴⁾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1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②~④ (생략)

13)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2조(검진비용의 부담)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②~④ (생략)

제13조(검진비용의 청구·지급) ①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자료로 검진비용을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7.(생략)

②(생략)

③ 공단은 제2항의 검진비용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검진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검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이 검진기관에 기재 오류 등 청구 착오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④~⑦ (생략)

14)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⑦ (생략)

○ 이에 따라 검진기관이 검진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¹⁵⁾에 따른 요양기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현재 병원선은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개정안에 따라 병원선이 검진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검진비용과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게 됨.

○ 이에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2호)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에 추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0001호)이 각각 발의되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은 이들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도서지역 주민 방문 건강검진 시 지역 주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는 현행 출장검진 활성화 등으로 가능하여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

15)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에 따른 보건소가 검진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므로 병원선이 의료기관으로 인정됨을 전제하는 경우에만 검진기관으로서 인정 가능하고, 이 경우에도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01

【참고1】	병원선별 진료 및 검진 시설 현황
--------------	---------------------------

(‘26년 8월 기준)

시도	병원선	진료 및 검진시설
인천 (옹진군)	인천 옹진호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보건교육실
충남	충남 병원선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약제실, 물리치료실
전남 광주	511호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약제실, 물리치료실
	512호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약제실
경남	511호	의과, 치과, 한의과 진료실, 약제실

자료: 보건복지부

【참고2】	검진장비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련
--------------	-------------------------------

(‘26년 8월 기준)

시도	병원선	건강검진 관련 장비(일반, 구강 기준)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검사·안전관리 가능 여부
인천 (웅진)	인천 웅진호	인바디 측정기(체중계), 혈압계,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 촬영장치,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고압멸균소독기, 치경, 탐침 및 핀셋	신고·검사·안전관리 가능
충남	충남 병원선	신장 및 체중계, 혈압계,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 촬영장치,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고압멸균소독기, 치경, 탐침 및 핀셋	검사·안전관리 가능
전남 광주	511호	신장계, 인바디 측정기(체중계), 혈압계,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 촬영장치,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고압멸균소독기, 치경, 탐침 및 핀셋	검사(신규 설치, 방어시설) 가능
	512호	신장계, 인바디 측정기(체중계), 원심분리기, 혈액학검사기기, 혈액화학분석기, 방사선 촬영장치,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고압멸균소독기, 치경, 탐침 및 핀셋, 교육용 치아모형세트	검사(신규 설치, 방어시설) 가능
경남	511호	혈압계, 시력검사표,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 고압멸균소독기, 치경, 탐침 및 핀셋, 교육용 치아모형세트	해당없음

(‘26년 8월 기준)

시도	병원선	검체 자체검사 여부 및 육상 검사기관 위탁 현황	검진가능여부		검진기관 지정 기준 충족 여부	지정기준 충족 위한 신규 장비·인력 확보 비용
			일반검진	암검진		
인천 (웅진)	인천 웅진호	위탁검사	X	X	미충족	인천, 충남, 전남, 경남 : 신규 검진 수요 등 고려 시 검진 장비·인력 확보 계획 없음
충남	충남 병원선	자체검사	X	X	미충족	
전남 광주	511호	자체검사 (방사선 촬영 외부판독 의뢰)	X	X	미충족	
	512호	자체검사 (방사선 촬영 외부판독 의뢰)	X	X	미충족	
경남	511호	해당없음	X	X	미충족	